

2022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876호
----------	--------

제출년월일 2021. 10. 08.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출자)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자·출연의 필요성
 -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특례보증 :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 출자·출연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콘텐츠기업, 청년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 지원한도 : 기업 당 3억 원 이내

4. 검토의견

가. 배경 및 취지

- 본 안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전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안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본 안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 기금의 시·군대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일반보증 심사에 비해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완화된 보증심사(매출액, 사업성 등을 평가)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여 사업자금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요청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는 사안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2022년도 시 출연금	2021년도 시 출연금	전년대비 증감액
1,386	1,847	△461

다.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김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김포시의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